

청소년리더십개발원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및 소재) 본 조직은 호서대학교 부설 청소년리더십개발원(The Korea Academy of Youth Leadership : KAYL)이라 칭하며(이하 리더십개발원 이라 한다) 호서대학교 내에 둔다.

제2조(목적) 리더십개발원은 청소년이 갖고 있는 잠재적 리더십을 개발·배양하여 부딪치는 상황을 창조적으로 극복해 내며, 그로써 미래 사회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청소년 지도자를 양성함으로써 청소년의 자기 향상성을 양양하며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리더십개발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와 개발사업(R & D Project) : 청소년리더십에 관한 연구와 청소년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사업
2. 교육과 연수사업(Education & Orientation Project)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교육 사업과 학부모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리더십 연수사업
3. 학술정보교류사업(Information Center) : 청소년리더십에 관한 학술 정보를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 교류시키는 사업
4. 국제교류사업(International Exchange) : 외국 청소년단체 및 기관의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를 초청하거나 방문하여 청소년리더십 분야에서의 국제교류 사업
5. 기타 리더십개발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 2 장 조직

제4조(조직) 리더십개발원은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운영위원회 : 의결기구로 호서대학교 교직원으로 구성
2. 집행기구 : 기획관리팀, 교육연수팀, 대외/학술협력팀
 - i) 기획관리팀 : 프로그램 개발, 홈페이지 관리, 발전계획 수립, 행정지원
 - ii) 교육연수팀 : 프로그램 운영, 자원인사발굴, 역대 참가자 명부 유지, 기타 수강생 민원처리
 - iii) 대외/학술협력팀 : 참가자 개발, 학술지 발간 배포, 학회운영
3. 자문위원회 :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

제5조(구성) 리더십개발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원장 1인
1. 운영위원회 9인(위원장 포함)
2. 기획홍보팀 약간 명
3. 교육연수팀 약간 명
4. 대외/학술협력팀 약간 명

5. 자문위원회 21인

제6조(구성원 자격과 지원, 임면) 리더십개발원의 구성원 자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원장은 대학 소속 전임 교수로 보한다.
2. 팀장은 호서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이상으로 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원장은 총장이 위촉한다.

제 3 장 자문위원회

제7조(조직) 리더십개발원에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

- 가. 리더십개발원의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 연구방향 설정, 예·결산 및 사업, 기타 주요 사항을 심의 결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 나.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교내 교직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 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라. 회의는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마. 운영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록은 위원들로부터 날인을 받아야 한다.

2. 자문위원회

- 가. 리더십개발원의 주요 정책, 프로그램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둔다.
- 나.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학계, 지역사회, 관련 단체의 전문가 혹은 관련인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 다. 자문위원회의 위원 임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운영 및 재정

제8조(재정) 리더십개발원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지원금, 연구프로젝트 용역비, 사업수익금, 기타 기부금 및 후원금
2. 회계연도는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9조(보고)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보고는 연구소 관리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연구소 운영실적보고서 - 다음해 3월말까지
(해당 학년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표 포함)
2. 매 회계연도 결산서 - 다음해 3월말까지
3.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월말까지
4. 기타 연구소와 관련된 자료

제10조(재산의 귀속) 리더십개발원의 해산 결의가 있을 때는 그 재산을 대학교에 귀속한다.

제 5 장 보 칩

제11조 (준용)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운영세칙)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 공포와 동시에 종전의 규정은 폐지한다.